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9. 27.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형재 의원 1인 발의(찬성자 강석주 의원 외 40명)
- 나. 제안일 : 2022. 08. 29.
- 다. 회부일 : 2022. 09. 02.
- 라. 의안번호 : 9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한반도의 통일안보는 이제 국제정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초당적 대북정책을 핵심으로 하여 그 변화와 흐름에 맞는 통일안보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시대적 요구임.
-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따른 남북갈등관계와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인한 국제환경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2018년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시도해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와 교류협력 및 대화 거부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는 이르지 못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존의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에 근간하여 변화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걸맞는 남북 소통채널 및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모색하는 한편,
- 신냉전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자유 민주 평화 통일 및 국가안보 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유 대한민국 번영 방안 모색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변화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걸맞는 남북소통 채널 구축 등 자유대한민국의 번영방안 모색 등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¹⁾ 구성을 제안함.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던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정세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질병, 재난, 경제 안보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화되고 있음.²⁾
- 올해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발표에 대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응해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북미 간의 대결 구도가 심화될수록 남북관계의 개선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안보 역학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 드라이브 지속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³⁾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2) 한국과 북한을 둘러싼 미·중·러의 대립, 한국의 방향은?, 2022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통일부, 2022. 6.

3) 2022년 남북관계, 어디에 있는가, 제주평화연구원, 2022. 2. 9.

-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비전 아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를 정하고 있음(붙임. 1.)

<표-1>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 실현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

비 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 비핵 · 평화 · 번영의 한반도 -
3대 원칙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5대 핵심 추진과제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⑤ 국민 ·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 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담대한 계획⁴⁾ 수립, 인도협력 추진, 이산가족·국군포로 등 문제해결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북한 인권 개선,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 추진, 미래세대 대상 통일 교육 강화, 국민참여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평화통일을 위한 세부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음.

4) 대통령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 표명('22.5.10)
 담대한 계획: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부의 평화통일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의 남북교류사업 추진방식의 전면적 재검토와 정세변화에 맞는 남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북평화통일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유대한민국의 번영방안 모색 등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구성결의안과 관련해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와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0항⁵⁾에 따라 행정국의 남북협력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 평화통일과 안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민족적, 경제적 지향점이고 국민의 일상 생활 속에 통일 안보 정서가 잡리매김 할 필요도 있을 것인바,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해 부터 설계 공모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통일문화센터(가칭) 건립(강북구 수유동 524-32, 527-39번지 일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문화본부를 소관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⁶⁾와 관련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5) ⑩ 남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개발지원·환경협력 등 개발지원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인도적 지원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제5호가목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동 안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⁷⁾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붙임. 2.),
 - 2018년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교류 협력 부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추진에는 이르지 못함.
 - 국제정세의 변화와 흐름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안보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통일안보지원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협력정책지원은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통일문화센터 건립 등은 문화본부 소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주요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소관 실국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을 회신함.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의견 없음.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1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 협의(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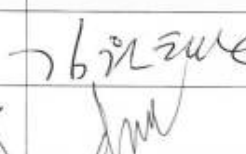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24>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대표발의자 : 김형재 의원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명칭 :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특별위원회 관련된 상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업무지원	확인서명
행정자치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X	

운 영 위 원 장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제출 -

〈2022. 9. 8.〉

본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 본 특별위원회는 현 남북관계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고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안보 방안을 모색하여, 기존의 남북교류사업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한반도 정세변화에 걸맞은 남북 소통 채널 확보 및 새로운 교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최초로 서울시의회의 평화통일 안보 메시지를 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남북관계에 대한 회복 기대와 서울과 평양 간 도시교류사업 추진을 통한 통일기반조성 강화를 목표로 2018년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교류 협력 부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추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 특히 북·중·러 협력체제에 대응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흐름을 직시하고 이에 걸맞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안보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특별시의 통일안보지원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협력정책지원원은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통일문화센터 건립 등은 문화본부 소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주요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소관 실국과 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된 동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